

조선후기 경주 방어리(防禦里) 사계(射契)와 동계(洞契)의 호혜와 협동 가치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선시대사 전공

swan@aks.ac.kr

- I. 머리말
 - II. 17세기 사계와 무부(武夫)의 동락상구(同樂相救)
 - III. 18세기 동계와 사족의 신의(信義)
 -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 과제로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AKSR2018-RC01).

I. 머리말

공유자산의 유지와 지속을 위한 공동체의 협동 가치는 그들이 작성한 규약에 남아있다. 이런 관점은 조선시대 각종 계의 규약 제정과 개정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계 운영 사실을 담고 있는 서문을 비롯하여 완의, 절목에 대한 제정과 개정이 계의 유지와 지속을 위한 계원 사이의 협동의 결과이며, 이러한 협동을 통해 유지 및 지속하고자 했던 가치는 호혜에 있었다. 특히, 농촌을 대상으로 도덕경제(Moral Economy)의 관점에서 조선시대 각종 계(契) 중 공간적 범위를 공유하는 동계는 공유자산(Commons)에 대한 호혜를 위한 협동의 과정을 제도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동계의 실체와 가치에 대해 접근하기 용이한 사례이다.¹

조선시대 동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호혜와 협동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시도는 선행연구 결과에도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계는 이른바 향촌사회사 연구의 중요 주제로, 사족들이 지역사회에 성리학적 가치를 투영하여 향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평가가 있다.² 이른바 사족지배체제, 혹은 향촌지배질서 속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점에서 동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
- 1 제임스 스콧 저, 김춘동 역, 『농민의 도덕경제』(아카넷, 2004)[J.C. Scott,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76)]; 더글라스 C.노스 저, 이병기 역,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한국경제연구원, 1996); 엘리너 오스트롬 저, 윤홍근·안도경 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RH Korea, 2010)[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 for Collective Action*(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0)].
 - 2 김인걸, 「조선후기 鄕村事會統制策의 위기: 洞契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58(1984); 김용덕, 「朝鮮後期の 地方自治: 鄕廳과 村契」, 『國史館論叢』 3(1989);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한길사, 1998);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민족문화사, 1996); 金炫榮, 『朝鮮時代의 兩班과 鄕村社會』(集文堂, 1999).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 발생한 호혜와 협동의 가치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³ 이 연구는 조선시대 농촌 마을 공동체에서 유형과 무형의 공유자산을 대상으로 호혜와 협동의 가치를 추구한 동계를 사례 분석한다.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방어리에는 조선시대 실시된 동계가 '방어리 상동계(上洞契)'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고문서가 남아있다.⁴ 문서에는 계의 운영을 위한 규약은 물론 전여(傳與) 및 회계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 '방어리 상동계'에서 정리한 「상동계사적초(上洞契事蹟抄)」, 「문화유적사료조사기」에는 17-18세기 마을에 존재했던 동계에 대한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⁵ 이에 의하면, 방어리의 계는 전후 무질서를 바로잡고자 1652년(효종 3) '사계'로 설립되어 무예를 익히고 상부상조를 기약했으며, 1683년(숙종 9) 이이훈(李以薰) 등이 계를 중수한 후 1841년(헌종 7) '상동계'로 개칭하여 향리를 위해 봉사하는 취지로 활동했다. 동계 고문서의 성격과 배경은 방어리 일대 세거 사족들의 가계기록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 방어리 계문서는 17세기에서 20세기에 작성된 「고왕록(考往錄)」, 「절목책(節目冊)」, 「동안(洞案)」, 「계안(契案)」, 「전여기(傳與記)」, 「시도기(時到記)」 등 3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주 방어리 상동계 고문서를 분석하여 사계에서 출발한 계가 동계로

-
- 3 한도현 외 저, 『양동마을과 공동체의 미래』(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경주 지역 국당리의 동계와 동약을 사례로 17세기 다수의 자연부락에서 공동으로 계가 운영된 사실을 규명하고, 계원을 대상으로 喪事에 있어서의 부조 활동을 호혜를 위해 협동의 시각으로 분석한 성과가 있다(정수환, 「17세기 경주 국당리 동계의 전통과 호혜 원리」, 『한국학』 47-4(2019a)).
 - 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M.F. No.9931-2(慶州市 外東邑 防禦里 上同契文書). '방어리 상동계 문서'는 1652년(효종 3)부터 1993년까지 3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有司 李根雨, 「上洞契事蹟抄」·「文化遺蹟史料調查記」(1993). 상동계 유사는 1993년 현재까지 상동계가 유지 및 지속되고 있으며 계원은 78명으로 밝혔다(「文化遺蹟史料調查記」). 방어리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석우, 이종관, 최기환 선생으로부터 자료제공 및 구술에 도움을 받았다.

진개하는 추이와 공동체 내에서 작동한 호혜와 협동의 내용을 추적할 수 있다. 동계 연구 성과 중 사계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있다. 사계를 분석한 결과 신분층 내 결속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내용이 도출되었다. 사계는 이서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19세기 강경 포구지역에서 성장한 비사족 부민층(관인, 품관, 급제)들이 무과를 통해 신분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⁶ 한편, 무과의 주요과목인 궁술과 연계하여 중인이하 계층에서 사풍이 일었던 배경이 밝혀졌다. 영광의 남극재(南極齋) 사례는 1587년(선조 20)에 창설되어 영광 지방 실무 관리들의 상부상조 조직이었던 사계가 1796년(정조 20) 노계(老契) 혹은 노소계(老所契)로 변화하기도 했다.⁷ 이러한 선행연구는 사계가 신분적으로 중·서층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상부상조를 통한 신분변화를 도모하였음을 보여준다. 방어리 사계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조선 후기 사계의 성격 및 변화와 관련한 새로운 사례를 발굴하고 호혜와 협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공동체 중 동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호혜와 협동의 원리와 가치를 추적하는 이 연구는 조선 후기, 특히 17-18세기 경주 방어리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연도 파악이 확정된 문서 중 완의, 절목 등 각종 규약을 대상으로 계의 창립 계기, 제도의 변화 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한 내·외부의 요인을 호혜와 협동의 관점에서 확인하겠다. 이를 위해 17세기 방어리 사계 창립 배경을 규명한 다음 이를 ‘중수’하고 작동한 18세기

-
- 6 나선하, 「조선 중·후기 靈光 吏胥집단의 契 운영과 그 의미: 射契와 老契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6-1(2003); 정연태, 「조선 후기-해방 이전 자산가형 지방 유력자와 射契: 포구 상업도시 江景 德游亭契 사례」, 『역사와현실』 60(2006). 정연태는 사계를 사정의 관리와 친목도모를 위한 엄격한 위계를 갖춘 조직으로, 지역사회에서 분쟁조정, 행사주관, 수세대행을 수행하는 자치 기구였다고 주장했다.
- 7 이중화, 『조선의 궁술』(조선궁술연구회, 1929), 29-31쪽; 김경옥, 「18세기 후반 영암 關武亭 社布契의 조직과 향촌 사회」, 『고문서연구』 35(2009); 이찬우, 「조선 중후기 영광지방 射契의 설립과 변천」, 『한국체육학회지』 51-6(2012).

동계의 성격에 대해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II. 17세기 사계와 무부(武夫)의 동락상구(同樂相救)

1. 습사(習射)와 시장(試場)을 위한 협동, 입의(立議)

경북 경주시 방어리에는 17세기 사계에서 출발하여 19세기 상동계로 중수한 동계가 운영되고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방어리 상동계’의 계주(契主), 문장(門長)은 동계의 시작을 1652년(효종 3) 사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계의 창립 시기는 현전 고문서 중 가장 오래 자료 『사계고왕록(射契考往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며, 자료 중 ‘개입의(改立議)’가 완성된 임진년, 즉 1652년(효종 3) 3월 22일 이전으로 볼 수 있다.⁸ 이후 1841년(헌종 7) 4월 15일 완의를 거쳐 상동계로 중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⁹

1993년 상동계에서 정리한 계의 내력과 관련한 내용에는 사계 창립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인근향리에 거주하는 사대부가 자손들이 임병양란(壬丙兩亂)의 가혹한 고통을 슬기롭게 받아들이면서 향토를 지키신 선인들의 유지를 받들고 전후 무질서한 사회풍조를 바로잡기 위하여 중지를 모아 창계(創契)하였으니 계명을

8 「壬辰3月22日射契改立義」, 『射契考往錄』. 이 입의는 ‘改立義’로서, 1652년 이전에 사계가 조직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경주 외동읍 국당리 상동계의 경우, 「동안」의 首卷이 전하지 않는 이유로 임란 직후인 1598년(선조 31) 경주일원에서 가장 먼저 동계를 설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權赫元, 『九思齋年譜』(九思齋精舍) (1996), 133쪽).

9 「完議文-辛丑四月十五日」, 『上洞稷案』.

사계라 칭하고 무예를 연마하여.....¹⁰

상동계에서 밝히고 있는 동계의 전신인 사계의 설립 배경은 방어리의 전신인 방어지리(防禦旨里)를 중심으로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왜란과 호란, 양란의 교훈과 전후의 혼란에 대응하는 데 있었다. 현지 조사에 의하면, 교훈은 호란이 발발하자 임란의 피해가 극심했던 경주지역에서 위기의식이 크게 일어난 사실이었다. 이를 계기로 습사를 위한 자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사계가 조직되었다고 계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방어리 상동계에 현재 공유하고 있는 고문서를 통해 양란이 남긴 교훈과 전후 혼란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사계를 조직한 배경을 알 수 있다. 경주지역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 군이 언양→경주→영천→문경을 거쳐 한양으로 향하는 진격로에 위치하면서 피해가 막심했다. 경주 지역은 『선생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적이 유실되었고 영천성과 경주성 복성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수반되었다.¹¹ 이런 전란 경험은 지역 방위를 위한 결속의 교훈을 남겼으며, 곧 이은 호란을 전후하여 군비 증원과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는 습사를 통한 지역 방위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다.¹² 이와같이 방어리 사계는 양란 뒤 혼란 수습과 더불어 전란에 대비한 자체 방비 준비라는 교훈을 창계(創契)로 연결시킨 사례이다.

10 有司 李根雨, 「上洞契事蹟抄」(1993).

11 『府尹先生案』, 府尹尹仁涵條; 김명자, 「18-19세기 永川 鄭世雅 후손들의 請諡와 門中 활동」, 『嶺南學』 18(2010), 299-301쪽;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慶尙左道 방위 활동」, 『軍史』 76(2010), 71-77쪽.

12 허태구,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강화 시도와 그 한계」, 『軍史』 109(2018), 251-253쪽; 趙克善(1595-1658)의 일기에 의하면 1620-1630년대 이른바 ‘西戒軍’ 편제에 따른 혼란상이 언급되어 있다(『忍齋日錄』, 辛酉年 秋 8月 7日; 『洽谷日錄』, 壬申年 9月 14日). 방어리 지명이 防禦使가 있었던 데서 연유했다거나 屯田 설치 사유가 지명으로 남았다는 내용은 이를 방증한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7(1979), 270-271쪽).

사계의 활동 배경으로는 17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 습사를 통한 결속과 무과 준비를 고려할 수 있다. 사계의 구성원 스스로 ‘무부’로 지칭한데서 알 수 있듯이 계의 1차 목적은 무예 연마에 있었다.¹³ 그리고 효종 즉위와 동시에 송시열에 의해 전면화한 이른바 북벌 정국과 사회결속 그리고 1651년(효종 2년) 별시를 통해 1,236명에 이르는 무과급제자 선발은 사계의 결속과 활동을 자극한 요인 중 하나였다.¹⁴ 실제로 계원 중 이진(李璉, 1642-1693)과 이선(李璿, 1646-1717) 형제가 무과에 급제했으며(부록1 참조), 좌목에 계원 직역이 업무, 무학, 정로위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 내용도 사계가 무과를 목적으로 한 계원의 결속에 활동 방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⁵

1652년(효종 3) 이전 사계의 활동은 전란의 교훈에 따른 지역 방위, 무과를 위한 무부들의 결속과 더불어 17세기 경주지역 일대에 일기 시작한 동계 창립의 분위기도 작용했다. 17세기 경주 국당리 동계 활동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부북(府北) 일대 주요 사족들 거주지를 중심으로 양동리, 양월리, 다산리 등에서 연속적으로 동계가 설립되고 있었다.¹⁶ 특히, 사계의 계원인 이진이 국당리 동계의 주축이었던 진형(陳弘, 1645-1713)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내용(부록1 참조)은 사계 설립과 활동 분위기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¹⁷

17세기 중엽 다중 배경에서 설립된 방어리 사계는 활동의 목적 또한

-
- 13 『射接案 小布契』, 「己巳四月初二日完議」. 전라도 영광지방의 사계는 습사를 위한 모임의 성격과 동시에 사족의 향사례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나선하(2003), 앞의 논문, 5쪽).
- 14 정수환, 「17세기 淸州 莘巷書院과 宋象賢 추모의 정치적 함의」, 『韓國書院學報』 9(2019b), 76-77쪽; 정해은, 『조선의 무관과 양반사회』(역사산책, 2019), 79-82쪽. 효종 2년은 별시를 포함해 4회의 무과가 실시되었다.
- 15 『射契考往錄』. 李璉은 1676년(숙종 2) 肅宗觀武에 급제했다.
- 16 정수환(2019a), 앞의 논문, 60-62쪽.
- 17 『洞案(庚)乙丑十二月日 改案』(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M.F. No. 35-9932, 慶州 江東面 菊堂里 上洞契資料).

다면적이었다. 창립초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입의에는 사계의 활동 방향이 적기되어 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교류하며 한 곳에 살아왔다. 환난의 일이 있을 경우 상구(相救)하지 못했고, 호락(好樂)의 일이 있음에 상호(相好)하지 못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바라건대 모름지기 지금부터 시작해서 서로 서로 한 몸으로 하나 같이 환난상구(患難相救)하고 모두 한 곳에 모여서 동락지환(同樂之歡)하며, 하나같이 사후(射候)하는 것은 남자의 일이니 어찌 익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바로 끝까지 형, 동생과 같은 의리로 서로 헤어지지 않고, 서로 어긋나지 않아서 어린 자가 연장자를 능멸하거나 먼저 화를 내어 망령되게 하는 자는 중하면 삭거(削去)하고 가벼우면 손도(損徒)하여 중벌하면 매우 다행일 것이다.¹⁸

인용문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 사계의 입의, 1652년(효종 3) 「사계개입의 (射契改立義)」 서문이다. 입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곧 무부라는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한 곳’으로 상징되는 방어지리(防禦旨里) 일대에 함께 거주한 사실을 강조했다. 현지 조사 결과 ‘방어지리’를 중심으로 인근의 방지(方旨), 못밑, 둔전(屯田), 원동(院洞), 만다리 등 5개 자연마을로 사계를 구성하고 자위적 차원에서 활쏘기와 무예를 익힌 내용이 확인된다.¹⁹ 경주의 읍지에 의하면 외동면의 행전촌으로 방어지와 북토상(北吐上)이 확인되고 있어 행정촌 방어리를 중심으로 일대 자연촌이

18 『射契考往錄』, 「壬辰3月22日射契改立義」.

19 방어리 동계관련 고문서 중 계원 거주지를 밝힌 자료는 1976년 「時到記」가 있다. 이에 의하면 계원은 출향한 인사들을 제외하고 方於, 月羅, 北吐, 院洞, 芳旨, 屯田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사계 구성을 위한 공간적 배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이는 17세기 전반에 구성된 경주 강동면의 국당리 동계와 동일한 양상이다.²¹

입의 서문에는 사계를 조직하게 된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계는 사후, 즉 같은 공간에 함께 거주하던 무부들이 습사를 매개로 결속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계를 매개로 교류하는 차원을 넘어 상구와 동락을 위한 협동의 가치인 ‘의리’ 실현에 목적이 있음을 드러냈다. 입의의 마지막 내용은 계원사이의 협동을 향한 결속력 강화와 운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삭거, 손도 등의 규제 조치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계는 1652년(효종 3) 이전 방어리 일대 공간을 공유하는 무부들이 습사를 통해 의리로 동고동락을 위해 협동할 목적으로 자체 규약을 제정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계 설립 이후 계의 유지와 지속을 위한 협동의 결과물인 입의에 대한 개정이 적어도 두 차례 실시되었다. 먼저, 1683년(숙종 9) 2월 15일 계해년 완의 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은 ‘계수 이(契首 李)’를 비롯하여 이이훈, 한준명(韓俊鳴)이 주도했으며, 계의 운영을 위해 공사원(公事員)으로 이정영(李廷榮)과 유사로 정계문(鄭繼門)이 참여했다. 이런 계의 임원 구성은 1652년(효종 3) 입의와 비교할 경우 계의 운영 조직과 입의 개정 주체를 밝히고 있어 사계 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된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개정된 입의는 사계의 지속을 위한 협동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우리 사계는 앞서 혼상(婚喪)때 서로 부조하는 내용에 대한 완의가 있었다.

20 『慶州邑誌』 권3, 坊面沿革.

21 정수환(2019a), 앞의 논문, 50-51쪽. 1539년(인조 17) 경상도 삼가현 玉溪亭契 또한 일종의 동계로서 계원들의 거주지는 옥계천 인근 10여리에 걸친 8-9개 마을이 대상으로 계원들은 거주지를 묶어 옥계동이라 명명했다(이광우, 「조선후기 慶尙道 三嘉縣 玉溪亭契의 재구성」, 『南溟學研究』 52(2016), 217쪽).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은 까닭으로 상장(喪葬)이 있을 때 약간의 부조를 할 수 있었을 뿐이고 혼례 때는 전연 없어 마치 서로 되돌아보지 않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완의에도 서로 어긋난다. 우리 계의 의리가 영성한 것이 너무 심해서 우리 사계 모든 계원이 매번 입의를 창설하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오히려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 이제 모두가 공의로 작정(酌定)하여 전부터 내려오면서 행해지지 않는 규약을 각자 척념해서 거행하면 아주 다행이겠다.²²

인용문은 완의를 개정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1652년(효종 3) 완의에서 밝힌 상구의 방향이 혼례와 상례에 있어서의 상호 부조라는 호혜의 가치에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례에 대해서 규약이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지난 입의 뒤 30년이 지난 1683년(숙종 9) 다시 창립 취지에 부합하는 호혜를 위한 협동을 결의했다. 이와 같이 30년 사이 사계 운영에 있어 영향을 끼친 변수 중 하나는 경신대기근(庚申大飢饉, 1670-1671)이었다. 이상이온으로 인한 대흉작 그리고 이어진 대기근으로 인한 구휼의 한계로 이 당시 1백만 명이 사망하면서 양란보다 큰 위기로 인식되고 있었다.²³ 이로 본다면 대기근 과정에서 다량의 상례 발생으로 사계에서 혼례보다 상례중심의 부의 관행이 정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완의 개정은 기근이 수습된 뒤 사계 본연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내용은 사계 본연의 '상구' 가치의 강조였다. 이러한 완의 개정은 계의 지속성을 위한 노력이자 계원의 침의(僉議) 수렴을 통한 협동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려 했던 노력의 결과이다.

22 『射契考往錄』, 「癸亥2月15日完議」.

23 박종천, 「공감과 개방의 문화공동체, 석천마을」, 『석천마을과 공동체의 미래』(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106-108쪽;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곡물유통」, 『역사와 경계』 85(2012), 347-349쪽.

사계 완의 개정 후 6년 뒤, 계원의 침의를 확인하는 협동을 통해 1689년(숙종 15) 4월 2일 다시 완의를 마련했다.

우리 무부는 덕과 재주와 명망에 따라 서로 돕고 한 곳에서 함께 즐거워(同樂)하는 일을 기쁨으로 한다. 하나같이 과거 시험장에서 서로 구제(相救)할 일이면 매우 다행이겠다.²⁴

완의는 사계 구성원이 '무부'임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마을 공동체의 상호동락(相助同樂)을 위한 협동을 강조했다. 그리고 무부들의 협동은 무과를 향한 상구, 즉 호혜였다. 입의 취지와 방향이 이전 혼상이라는 호혜를 위한 협동보다 무과를 대비한 습사라는 무부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곧 무부들의 결속을 재확인한 내용이자 다음 장에서 살펴볼 사계가 동계로 계승 혹은 결합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다.

2. 호혜를 위한 공유자산, 기물과 계금

무부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사계의 취지와 운영 방향은 1652년(효종 3) 입의에 명기되었다. 그리고 이후 두 차례의 입의를 개정한 내용은 사계 설립의 가치를 유지 및 지속하기 위한 협동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협동으로 실현하고자 한 호혜의 가치는 완의와 동시에 제정 및 개정한 규약과 절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계는 1652년(효종 3) 완의를 개정하면서 12개 조목으로 구성된 조약을 부기했다. 이들 조목은 입의에서 밝혔듯이 협동을 통해 상구와 동락을

24 『射接案 小布契』, 「己巳四月初二日完議」.

실현하기 위한 호혜의 가치인 혼상부조와 이를 위한 공용 기물 관리, 공용 재원운영 그리고 계원 관리와 같은 크게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들 규약은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위한 기반이 되므로 조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계의 설립 취지로 먼저 제시되었던 혼사와 상사에 있어서의 상호 부조와 관련한 내용은 5개 규약이었다.

1. 사계 계원 중 출상하면 백지 1권을 부의하고 각기 재목, 개초(蓋草), 공석(空石)을 가져온다. 빈(殯) 3칸을 성빈한 뒤에는 동시에 조배(弔拜)할 일이다.
1. 영장(永葬)할 때 매 계원에게 진말(眞末) 2되, 진임자(眞荏子) 1되, 백주 1분(盆), 반미 3되, 채사(菜筍) 등을 유사가 담당해서 호상소에 실어 나를 일이다.
1. 조분(造墓)할 때 매 계원에게 역노 1명, 담지군 1명을 부역할 일이다.
1. 대상과 소상 때에 각기 전작(奠酌)하고 밤을 지새울 일이다.
1. 영혼(迎婚)할 때에 매 계원에게 건어 1미, 백주 1분을 유사가 본택에 수송해 납입할 일이다.²⁵

조목 내용은 동락(同樂)을 위한 혼사보다 상구(相救)를 위한 상사에 대한 조목이 먼저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사를 ‘출상→영장→조묘→대상·소상’의 각 의절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물력과 인력의 지원은 물론 계원의 조문도 규정했다. 일례로 계원이 상사를 당해 출상할 경우 사계는 백지를 부의하고 빈소를 위한 재목, 개초, 공석 등을 지원했다. 빈소가 설치된 뒤에는 계원이 함께 조문하도록 했다. 영장 때에도 사계에서

25 『射契考往錄』, 「壬辰3月22日射契改立義」.

유사가 음식물을 갖추어 계원의 호분소로 보냈다. 그리고 조분을 위해 역노와 담지군 각 1명을 지원하도록 하고, 계원이 대상과 소상에 슬픔을 함께 나누는 내용을 강조했다. 상사뿐만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도 유사가 건어와 백주를 혼주대에 납입하도록 했다.

사계의 규약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계의 재원 운영과 계원에 대한 호혜를 목적으로 공동 기물, 즉 공유자산(Commons)에 대한 관리와 관련 있었다.²⁶ 규약에는 공유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1. 사계 외의 사람이 차일을 사용한다면 백지 2권을, 병풍을 사용하면 백지 1권, 차일과 병풍을 모두 사용한다면 호목(好木) 1필을 받을 일이다.²⁷

사계를 위한 집물로 차일과 병풍이 존재했으며, 계원에 대해 상사에 이들 공유물을 지원함으로써 호혜를 실현했다. 그러나 계원이 아닐 경우 물중에 따라 백지와 면포로 비용을 차등 부과하여 사계 재원의 확보와 공유자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했다.

1652년(효종 3) 3월 22일 입의와 규약을 완성한 다음 그해 11월에 사계는 계의 기물, 즉 공유자산에 대한 내역을 정리했다.

후(幙) 1부(部), 차일 1부, 장(帳) 3부, 병풍 1좌(坐), 喪輦(상연)[四面雲角 4부, 上下方機 8개, 柱木 4개, 上下朴宮 2, 旨竹 1, 鳳頭 4, 龍頭 2, 稚帳 1부, 斂衣 1부, 搖鈴 6, 青天 1부, 鐵釘 8, 蠶 10, 旨童子 3, 紅尾絲 大小 16]²⁸

사계의 기물 중 습사와 관련한 후(幙), 장(帳)을 제외하고는 혼상을 위한

26 엘리너 오스트롬 저, 윤홍근·안도경 역(2010), 앞의 책.

27 『射契考往錄』, 「壬辰3月22日射契改立義」.

28 『射契考往錄』, 「壬辰11月日器物置簿」.

준비물이었으며, 모두 5종이었다. 규약에 언급한 내용과 같이 차일, 병풍은 계원이 아니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차용할 수 있었으나 상여는 제외했다. 이는 곧 계원만을 위한 공유자산임을 강조한 내용으로 계원을 위한 호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를 암시했다.²⁹ 그리고 상여 구성물에 대해서도 일일이 밝혀 기록하여 공유물의 정확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같이 사계는 ‘공유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계의 조목을 마련하고 있어 호혜를 위한 협동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다.

1652년(효종 3) 규약의 중요 내용 중 세 번째는 호혜를 위한 사계의 재원운영이었다. 계의 지속성을 위한 계원의 참여와 재원 확보를 위한 규약을 제시했다.

1. 원해서 계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목 2필, 행과(行果) 1, 술 1분 등을 받은 다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일이다.
1. 사원(射員) 중에 봄에는 매 계원이 모(牟) 1말, 가을에는 매 계원이 조(租) 1말씩 해서 일일이 수합(輸合)하여 고상(庫上)하였다가 봄 동안 먹고자 하는(願食)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고 주어 반곡(反穀)할 일이다.
1. 상수잡물(喪需雜物)을 받은 계원은 양상(兩喪)과 양혼(兩婚)을 받은 뒤에는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³⁰

29 전라도 영광 사계는 1602년 상여와 유둔을 갖추고 계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되 타인이 빌려갈 경우 木 半屯을 받았으며(나선하(2003), 앞의 논문, 3쪽), 영암지역 1806-1822년의 사포계 約條에도 상사를 위한 공용품으로 遮日과 揮帳을 비치하고 있었다(김경옥(2009), 앞의 논문, 21쪽).

30 『射契考往錄』, 「壬辰3月22日射契改立義」.

사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입(願入)의 경우 면포로 상징되는 계금의 납입은 물론 통과의례를 암시하는 안주와 술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계는 동락상구라는 호혜를 위해 필요한 공유자산 중 하나인 계금을 운영했다. 사계 계원을 대상으로 봄과 가을에 곡물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식리는 물론 곡물로 운영하는 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번곡을 도모했다. 계금은 비단 상흔에 지원하는 물종의 마련뿐만 아니라 춘궁기 구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혼상과 더불어 진대(賑貸)도 상구라는 호혜를 위한 공유자산이었다. 그리고 계금의 안정화를 위해 혼상에 대한 호혜의 범위를 양상(兩喪)과 양혼(兩婚)으로 한정하는데 합의하는 협동 체계를 갖추었다.

사계의 호혜를 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원간의 협동이 수반되어야 했으며, 협동을 위해서는 계원에 대한 통제가 필요했다. 완의 내용 중 마지막 주요 내용은 사계 계원에 대한 규약으로 모두 3개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1. 봄과 가을의 강신(講信)은 무릇 모임 때가 되어 혹시라도 무단히 오지 않는 계원은 각별이 중벌하되, 연이어서 3번 불참한다면 삭거하고 유고가 있는 계원은 단자를 올린 뒤 분간할 일이다.
1. 담당이 갈마드는 예규는 공사원은 9과반(果盤) 7미(味)를 진정하고, 유사는 7과반 5미를 올릴 일이다.
1. 사계 안에서 참례할 때 예사로 참석하지 않는 계원은 봉상(封床)한 뒤에 백지 10장을 징수해서 받을 일이다.³¹

완의 서문에서 장유유서를 사례로 삭거와 손도라는 중벌을 언급한 내용

31 『射契考往錄』, 「壬辰3月22日射契改立義」.

은 사계의 결속, 즉 협동에 대한 강조였다.³² 이 내용을 반영하여 규약에는 사계에서 실시하는 봄, 가을 강신에 계원 참여가 중요한 의무로 강조되었다. 계원 중 강신에 연속 3회 불참할 경우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중별로 조치하여 삭거 조치했다. 다만, 혼상에 참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백지를 징수하는 벌칙을 두어 계원의 결속을 위한 경중의 처벌을 갖추었다. 그리고 사계의 운영을 위해 공사와 유사 조직을 두고 체직 때 이들에 대한 공을 드러내는 찬품 제공을 규정했다.

1652년(효종 3)의 규약은 상흔 부조라는 호혜를 위한 공유자산으로 기물과 계금을 운영했으며, 사계의 지속을 위한 계원의 결속을 위한 협동을 강조했다. 이러한 완의와 규약은 이후 사계 운영의 기틀이 되었으며, 사계는 기근 등으로 인한 운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완의를 통한 규약의 개정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신대기근을 겪은 뒤 현실을 반영하여 1683년(숙종 9) 사계의 호혜가치인 혼상에서의 상조를 재확인하는 완의 개정이 있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축소된 계원의 혼사에 대한 사계차원의 부조의 회복이었다. 이에 따라 1652년(효종 3) 규약에 건어 1미와 백주 1분을 지원하던 내용을 대구어(乾大口) 5미, 혹은 목면 부조로 조정했다.³³ 침의 수합의 절차를 거쳐 조목에 대한 개정을 실현하고 사계의 호혜 가치 복원을 시도했다.

완의와 규약 준비를 통해 사계의 정상화 노력을 시도했음에도 무부를 중심으로 한 계의 지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689년(숙종 15) 다시 입의 개정을 실시하여 무부의 결속을 위한 보다 강력한 규약이 적용되었다. 개정된 규약은 12조목에서 8조목으로 축소되었음에도 계원에 대한 단속과

32 擯徒는 향약과 관련하여 유래한 처벌규정으로 회원자격의 일시적 중지였다(정구복, 「古文書用語 풀이: 齊馬首와 擯徒」, 『古文書研究』 5(1994), 338-339쪽).

33 『射契考往錄』, 「癸亥2月15日完議」.

재원의 운영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 사회(射會)를 할 때 사규(射規)를 준수하지 않으면 중죄할 것.
1. 나중에 원입(願入)하려는 사람은 영원히 거론하지 말 것.
1. 봄, 가을의 강신은 무릇 취회할 때에 혹시라도 무단히 불참하는 계원은 중죄할 것.
1. 무릇 취회할 때 어리면서 어른을 능멸하거나 먼저 화를 내고 망령되어 하는 자는 삭거할 것.³⁴

사계에서 사회를 개최할 때 엄격한 사규 준수를 강조했다. 이를 보여주듯 강신에 불참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에 대해 중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계원에 대한 규제 내용은 사계 창립 당시에도 존재했으나 규약 개정 과정에서 재론되고 강조함으로써 사계 운영의 변한 환경을 보여준다. 이런 사정은 사계 재원 운영과 관련한 규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임원이 바뀌어 전여(傳與)할 때에 술 2동이를 안주를 갖추어 주되 1년으로 제한할 것.
1. 접중(接中) 면분(綿分)할 때에 참석하지 않은 계원은 영원히 내버려 두지 말고 바로 쫓아낼 것.
1. 상사 때 형제처럼 계원을 같이 여겨 극진히 돌보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을 끝낼 일.
1. 남겨둔 곡물 수합은 한 번에 갖추어 받고 만일 내지 않는 한 계원은 중죄로 이자 받을 것.³⁵

34 『射接案 小布契』, 「己巳四月初二日完議」.

35 『射接案 小布契』, 「己巳四月初二日完議」.

임원에 대한 구분을 생략하고 체임하는 임원에 대한 지원의 규모는 예전 9-5과미(果味)에서 주미(酒味)로 축소되고, 임원의 임기도 1년으로 제한했다. 공사와 유사의 선임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역을 1년으로 경감하면서도 재원의 제약으로 임원에 대한 지원도 줄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계의 재원을 위한 면포 할당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로부터 받은 곡물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출척하거나 중죄로 조치하기도 했다. 사계 계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규약 외에도 상례에 계원으로서 상구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강조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사계의 결속력과 운영력이 오히려 약화했음을 보여준다.

1689년(숙종 15) 사계 규약의 개정은 조목의 축소와 더불어 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계원단속 강화는 역설적으로 사계의 결속력이 약화된 현실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계의 운영을 위한 계금에 있어서도 계금의 납입이 적시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계원에 대한 호혜에 있어서도 계를 창립할 당시 강조하였던 상훈이 아닌 상사에 한정하고 있으며, 상사에 있어서도 물력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있다. 이와 같이 1689년(숙종 15) 입의와 조목은 무부들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1652년(효종 3)의 내용보다 후퇴하고 있으며, 사계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목 체계가 약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사계와 동계의 연결과 관련 있었다.

36 원의와 규약의 내용은 수정의 흔적이 산견되고 있어 개정을 고려한 초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17세기 말 사계의 개정이 성공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계의 개정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1689년(숙종 15) 이후 계는 결속과 운영이 약화했을 개연성이 높다(『射接案 小布契』, 「己巳四月初二日完議」).

Ⅲ. 18세기 동계와 사족의 신의(信義)

1. 사계, 동계와 완의개수(完議改修) 협동

방어리 상동계의 전신이 사계이며, 17세기 후반 사계의 중수를 거쳐 1841년(헌종 7) 상동계로 계승되었다는 현재 제주와 유사의 인식은 수정이 필요하다.³⁷ 현전 고문서에는 '동계' 관련한 자료가 「동안」, 「계안」, 「전여기」, 「고왕록」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이들 자료 중에는 동계의 중수와 개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계안」 중 동계를 중수한 배경을 수록한 완의를 통해 사계와 동계의 관계성을 추정할 수 있다.

동계를 중수하면서 완의의 서문을 갖추었으며, 이를 주도한 인물은 우암(寓庵) 남구명(南九明, 1661-1719)이었다. 그의 동계 중수 사실은 1841년(헌종 7) 동계가 상동계로 중수될 당시 작성한 완의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상계(上契)는 창설하여 지금 200여 년이다. 삼가 남우암(南寓庵)의 완의 서문을 살펴보니 '신(信)'이라는 한 글자를 으뜸으로 삼고 대의(大義)로서 서로 돕는 것을 삼았다. 그리고 절목을 윤색하고 규칙을 수정하고 넓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래서 과녁을 설치한데 이르러서는 덕을 보고 준엄한 벌로 게으름을 책망했다.³⁸

상계, 즉 상동계가 200년 전 연원했다는 기술을 통해 사계를 계승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상동계는 남구명이 사계를 개수 혹은 중수한 결과로 강조되고 있다. 서문에는 또한 남구명이 계의 가치를

37 有司 李根雨, 「上洞契事蹟抄」·「文化遺蹟史料調查記」(1993).

38 『上同契案』, 「完議文」.

‘신’의’로 밝히고 무부에 의한 사계가 덕을 함양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동계로 정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구명은 영해출신으로 1693년(숙종 19) 문과 급제 후 경주로 이거하며 방어리 인근 영호(影湖)에 소옥을 짓고 십수 년을 독서에 열중하였으며, 그가 우암으로 자호한 시기도 이때였다.³⁹ 그가 영해를 떠나 경주 방어리로 입향한 데에는 그의 처가가 이곳에 세거하고 있던 경주이씨였기 때문이었다(부록1 참조). 특히, 방어리 동계의 중수에 관여하게 된 이유 중에는 그의 장인 이진(1642-1693)이 사계의 핵심구성원이었던 데에도 이유가 있었다.

이런 배경이 작용하여 남구명이 계를 중수한 경위와 결과는 「완의서(完議序)」에 반영되었다.

이해 10월 초하룻날 월라동(月蘿洞) 송정(松亭)에 모여서 계를 닦는 일이다. 약조가 이미 이루어지자 다만 두 사람이 좌중에 “무릇 계는 신(信)을 귀하게 여기는데 믿음이 없으면 계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의 계는 작은 것을 계기로 크게 만들고 옛것을 고쳐서 새롭게 그 절목을 정해서 윤색하고 규모를 갖추고 법식을 넓혔다. 길흉에 상조하는 것은 의(義)를 도답게 하는 것이고 한잔 술로 서로 기뻐하여 기쁨을 퍼는 것이다. 과녁을 설치하는 것은 덕을 보고자 함이고 준엄한 벌은 오만함을 꾸짖는 것이다. 무릇 여러 가지 느슨하고 긴장하게 하는 도리는 법을 늘어놓음에 하나같이 ‘신’자로 하지 않을 수 없는데……⁴⁰

39 『寓庵先生文集』 권5, 「附錄·家狀(南龍萬)」. 가장에는 그가 우거하는 동안 적극 교육을 펼쳤으며 그 영향으로 ‘興學鼻祖’로 칭송되고 있다고 적고 있어 계의 중수를 전후한 그의 행적을 암시하고 있다.

40 『契案 第7號』, 「完議序」. 남구명의 문집 『寓菴先生文集』에는 동계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무인년, 즉 1698년(숙종 24) 10월 1일에 월라동의 송정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월라동은 옛 경주군 내동면 실리(失里)와 외동면 북토리(北吐里)에 걸쳐 있던 행정촌 월라리(月羅里)였다.⁴¹ 따라서 사계가 포괄하고 있는 공간적 배경과 중첩되고 있었다. 남구명이 밝힌 계의 방향은 '신의'였으며, 이를 위해 계원간의 결속과 길흉에서의 상조를 강조했다.⁴² 그리고 완의에서 기존의 규약을 정비해서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사계가 습사를 통해 함양하고자 했던 '덕(德)'을 신의라는 새로운 가치로 승화했다.

남구명의 완의 서문은 사계를 중수한 결과임과 동시에 기존의 동계와 사계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1665년(현종 6) 「고왕록」은 방어리 일대에 사계와는 다른 계가 존재했으며, 이는 동계였음을 암시하고 있다.⁴³ 「고왕록」 내용은 같은 해 7월 1일 「동내고왕록급완의절목(洞內考往錄及完議節目)」을 필두로 계의 부조내역을 포함하고 있다.⁴⁴ 내용에 따르면 방어지(防禦旨), 원지(院旨), 죽일(竹日), 제내(堤內), 토상(吐上)에 거주하는 각 성씨의 인물들이 상호부조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계원의 거주지는 사계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지 조사에서 현재의 상동계가 방지리와 둔전의 월성이씨, 영호의 청안이씨, 원동의 여강이씨를 중심으로 하면서 경주이씨와 청안이씨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었다는 사실과 일부 부합한다. 따라서 17세기 중엽 방어리 일대에는 사계와 함께 동계가 운영되고 있었음을

41 越智唯七編纂,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中央市場, 1917), 487-488쪽.

42 남구명은 1712-1715년까지 제주관관으로 재임하며 제주 유교화를 목적으로 현실적 세계관을 투영한 작품 활동을 전개했다(김경, 「南九明 說의 특징과 이를 통해 본 조선후기 濟州」, 『오문논집』 87(2019), 49-50쪽). 남구명이 방어리 동계를 중수하고 후학을 교육한 경험은 향후 제주에서 구휼활동을 펼치는데 간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서신혜, 「조선후기 凶荒 현장과 제주 목민관의 생각: 남구명의 「凶年記事」와 양헌수의 「側棄兒說」을 중심으로」, 『溫知論叢』 48(2016), 126-127쪽).

43 『고왕록』에 契任과 더불어 洞內, 洞任 등이 기재되어 있다(『考往錄-乙巳年爲始』). 그리고 1679년(숙종 5)부터 『洞案-己未』이 작성되었다.

44 『考往錄-乙巳年爲始』, 「乙巳七月1日洞內考往錄及完議節目」.

알 수 있다.

사계와 동계의 계원 구성은 중첩되고 있었으며, 이들 사이의 구분과 차별은 확인하기 어렵다. 동계와 관련한 1665년(현종 6) 『고왕록』과 1679년(숙종 5) 『동안』에 게재된 주요 계원 중 최우급(崔友炭), 한여호(韓汝護), 이민영(李敏榮), 이여훈(李汝薰) 등은 『사계고왕록』에서도 확인된다.⁴⁵ 따라서 17세기 후반 방어리 일대에는 사계와 동계가 동시에 운영되었으며, 계원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전 『전여기』의 기록 중 1690년(숙종 16)-1711년(숙종 37)까지는 사계에 대한 전여라는 사실을 밝혀 기재했으나, 과도기를 거쳐 1713년 이후는 동계에 대한 전여로 갈무리하고 있다.⁴⁶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계의 기물이었던 차일, 상여 등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어 동계로 통합된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남구명은 이러한 현실에서 1698년(숙종 24) 두 계를 통합하여, 엄격히 말하면 사계를 흡수하여 동계를 중수한데 대한 서문을 기술함으로써 그 의미를 부각했다.

동계를 중심으로 사계를 통합하여 중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몇 가지가 있었다. 무엇보다 을병대기근(乙丙大飢饉, 1695-1696)으로 인한 거듭된 상사와 동리 주변 환경에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었다.⁴⁷ 먼저 대기근으로 인한 마을내 혼란과 재원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공간에 다수의 계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방어리 일대에 여러 계가 존재했으며, 마을 구성원은 사계와 동계에서 동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45 『射契考往錄』; 『考往錄-乙巳年爲始』. 이로 볼 때 방어리 사계는 18세기 후반 전라도 영암에서 외곽의 양반사족에 대응하여 읍치를 중심으로 향리세력이 1797년 사포 계를 조직하고 결속한 양상과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김경옥(2009), 앞의 논문, 30-31쪽).

46 『傳與記』(庚午-己未).

47 박종천(2017), 앞의 논문, 106쪽. 조선후기 중인, 노비 등도 신분간 친족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나영훈, 「조선후기 觀象監 관원의 친족 네트워크와 결속」, 『한국학』 42-1(2019), 46-47쪽).

두 계에 동시에 지속 참여한 경주이씨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이씨는 조선시대에 여주이씨·경주최씨·연일정씨·청안이씨·영양남씨·안동권씨와 더불어 경주를 대표하는 사족가문으로 방어리에 세거하다가 이진택(李鎭宅, 1738-1805)에 의해 1800년 경 구정리(九政里=蘇亭) 일대로 이거했다.⁴⁸ 경주이씨 역대 인물들은 사계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그 중 이진과 이선은 무과를 성취하기도 했다(부록1 참조). 그리고 이진은 또한 동계의 계원이기도 했다. 더불어 그는 문과에 급제한 남구명을 사위로 맞아 방어리에 함께 살게 되면서 동계 중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했다.⁴⁹ 따라서 경주이씨 이진이 주축이 되어 동계를 중심으로 기존 마을에 존재하고 있던 사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하겠다.

사계와 동계의 결합에 경주이씨와 함께 연대한 가계는 동계의 주축이 이루던 경주최씨였다. 1665년(현종 6) 『고왕록』에 경주최씨 최국우(崔國佑), 최국서(崔國瑞), 최국인(崔國仁) 등은 경주이씨 인물들과 동시에 기재되어 동계에 참여하고 있음에 반해 『사계고왕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 경주최씨 출신은 사계가 아닌 동계에만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육의당(六宜堂) 최계종(崔繼宗, 1570-1647) 후손으로 경주부의 부남을 주도하고 있었다(부록2 참조). 경주지역의 경우 17세기까지는 여주이씨 등을 주축으로 부북 지역이 주도하다가 17세기 말 부남의 경주최씨 계열이 부상하고 있었다.⁵⁰ 최계종 또한 무과와 효행으로 발신했으며, 그의 후손이 경주이씨와 동계를 주도하고 연대하면서 사계와의 합계를 위한 배경을 완성할 수 있었다.

경주이씨 이진, 이선 형제는 17세기 말 기존 동계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하고

48 金鶴洙, 「古文書를 통해 본 蘇亭 慶州李氏家の 家系와 社會經濟的 기반」, 『古文書集成慶州 蘇亭 慶州李氏篇』 62(2002), 2-3쪽.

49 『洞案(辰)-乙丑十二月日 改案』. 부록1 참조. 정수환(2019a), 앞의 논문, 52쪽·72쪽.

50 李樹煥, 「慶州 龍山書院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龍山書院』(집문당, 2005), 27쪽.

있던 경주최씨와 연대를 성취하였다. 경주최씨도 18세기부터 영양남씨 등과 연계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경주이씨와 연대에 난점이 없었다.⁵¹ 1698년(숙종 24) 경주이씨를 중심으로 경주최씨와 연대한 결과 동계 중심으로 사계에 대한 합계가 완성되었으며, 일시적인 과도기를 거쳐 동계가 정착되면서 기존의 사계는 약화했다.⁵²

동계 중수와 남구명의 완의가 있는 뒤 18세기 전반 환경변화에 따른 계원간의 협동을 통한 완의의 개정, 즉 '18세기 전반 완의'가 있었다.

동내에 신설한 뒤에 거듭 유행병, 흉환을 당해 무릇 규모를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오래된 폐단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때에 맞추어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기회에 모두 절목을 개정하기 위해 모인 일이다.⁵³

이 완의의 개정 시점은 18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 문서에 완의 개정 일시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 완의가 개정된 후 1749년(영조 25) 3월 규약을 정비한 사실을 적고 있기 때문이다.⁵⁴ 위의 '18세기 전반 완의'에 의하면 동계를 중수 혹은 개수한 뒤에도 대기근, 즉 을병대기근의 여파로

51 李炳勳, 『朝鮮後期 慶州 玉山書院의 運營과 役割』,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 91쪽.

52 1689년(숙종 15) 사계의 완의와 규약 내용을 개정하는 과정에서(주24, 주36 관련) 조목은 축소되었으나 계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는데, 여기에는 1698년(숙종 24) 이와 같은 동계 우위의 사계 합계 움직임이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합계 과정에서 사계 계원이 모두 동계에 참여하지는 않은 이유는 移居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된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사계고왕록』에는 흥해, 울산 등의 타관으로 이거한 사례가 있으며, 경주 국당리 동계에서도 이거로 인해 동계에서 自退 조차가 이루어졌다(정수환(2019a), 앞의 논문, 567쪽).

53 『洞契節目冊』, 「完議」.

54 『洞契節目冊』, 「己巳三月初九日改節目」.

인해 계의 정상화가 조속히 실현되지 못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계의 공유자산의 지속성을 침해하는 폐단을 일소하기 위해 첨의를 수합하는 협동과정을 거쳐 절목을 개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 현실을 적었다. 이 '18세기 전반 완의'는 동계의 개수를 위한 협동의 성취 이후에도 계의 유지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계에서 노력을 경주한 결과였다. 이러한 협동을 위한 호혜의 내용은 규약의 개정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호혜를 위한 공유자산과 협동

1698년(숙종 24) 10월 1일 경주이씨와 경주최씨 주도로 동계 중심으로 사계를 합계하고, 남구명에 의해 동계 완의가 중수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동계는 협동의 과정인 첨의 수렴을 거쳐 규약과 절목의 개정을 실현했다. 이후 1841년(헌종 7) 상동계로 개수하기 이전 동계의 완의 혹은 절목의 개정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65년 동계 완의절목→1685년 동계 완의절목 신증(新增)→1698년 무인완의(戊寅完議)→1702년 동계 추록(追錄)→'18세기 전반 완의'→1749년 기사개절목(己巳改節目)→1767년 정해개절목(丁亥改節目)→1782년 임인절목개정(壬寅節目改定)→1802년 임술신절목(壬戌新節目)→1841년 상동계 신축완의문(辛丑完議文)⁵⁵

1665년(헌종 6) 동계 이후 1698년(숙종 24) 사계와 동계의 합계, 그리고

55 『考往錄-乙巳年爲始』; 『契案 第7號』; 『洞契節目冊』; 『上同稷案』.

1841년(헌종 7) 상동계로 중수되기까지 모두 10회의 완의와 절목 혹은 조약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바로 동계 운영을 위한 협동의 결과물이었다. 호혜를 위한 협동의 내용은 10회의 완의 혹은 절목 중에서도 1665년 동계 당시의 완의절목, 1698년 사계와 합계한 완의 그리고 동계가 작동한 '18세기 전반 완의'의 3가지 사례를 대표로 분석할 수 있다.

1665년(현종 6) 7월 1일 「동내고왕록급완의절목」을 통해 완의와 절목이 마련되었으나 현재 완의 없이 절목만 전하고 있다. 20개 조목으로 구성된 절목의 내용은 크게 상호 부조, 공유자산 관리, 계금 운영 그리고 계원 관리로 대별할 수 있다.⁵⁶ 절목 20개 조목 중 11개는 상호부조와 관련한 내용으로 호혜의 각론에 해당하며, 대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제가 많이 계에 들어 있는 계원은 상사의 전례에 따른 예물을 한꺼번에 모두 받으면 계의 물력이 지탱하기 어려우므로 상포 2필 외의 잡물은 1원만 갖추어 줄 일이다.
1. 계원 중에서 문무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가 있어 상경하거나 그 외에 멀리 가는 사람은 때에 따라 변통하여 지원하고 도와줄 일이다.
1. 계원 중에 수재, 화재, 도적과 같이 뜻밖의 근심이 있으면 때에 따라 변통하여 부조할 일이다.
1. 하전(下典) 2명을 모입(募入)한 뒤에 만일 마을의 잡역에 침해를 입게 되면 함께 청원하고 구제할 일이다.⁵⁷

호혜의 내용은 혼상, 과거, 재난, 잡역과 관련이 있었다. 혼례와 상사의 부조는 물론 과거와 원행길에 대한 지원, 재난에 대한 위로 그리고 마을

56 이러한 내용 구성은 1652년(효종 3) 사계와 동일하다.

57 『考往錄-乙巳年爲始』, 「乙巳7月1日洞內考往錄及完議節目」.

공동체를 잡역의 압박으로부터 수호하는데 있었다. 사계와 동일하게 상사와 혼상에 대한 상호부조를 규정하면서도 범주를 세분화하여 부조를 위한 친족의 범위를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계원당 지원 물력의 한계를 양혼(兩婚), 양상(兩喪)으로 확인하여 지원 가능한 물력 규모의 한계를 설정하여 동계의 지속을 위한 규약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원에 대한 지원의 사유는 사계에서 규정한 동락과 상구의 범위를 넘고 있었다.

동계는 호혜적 지원과 함께 공유자산 관리를 위한 협동을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1. 방어, 죽일, 원지 세 마을 중에 매년 각기 방목감고(放牧監考) 1명을 내어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추수한 뒤에 정지한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감고 3명이 각기 2태(馱)씩 일일이 동임(洞任)에게 아된다.⁵⁸

사계의 경우 병풍, 차일 등 일부 물종을 공유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에 반해 동계는 방어리 인근 자연촌 일대 방목을 위한 방목지를 공유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었다.⁵⁹ 방어리 일대 마을에서 공동 관리하는 목초지를 대상으로 마을 공동으로 담당자, 즉 방목감고를 선정하여 목초를 확보하고 이를 동계의 자산으로 확보했다.

목초지 외에 공유자산의 일환으로 계금의 관리를 위한 규약을 갖추었다. 계원에 대해 봄, 가을에 곡물을 수합함에 있어 3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원을 대상으로 식리활동을 전개하는 조약을 마련했다. 이러한 재원의 마련과 운영은 계원에 한정했다.

58 『考往錄-乙巳年爲始』, 「乙巳7月1日洞內考往錄及完議節目」.

59 오스트롬은 산림, 관개, 지하수와 더불어 목초지를 대표적인 공유자산으로 분석했다(엘리너 오스트롬 저, 윤홍근·안도경 역(2010), 앞의 책).

동계의 운영 지속을 위한 중요 내용으로 공사와 계원에 대한 행동규약을 포함했다. 공사의 임기와 대우를 비롯하여 이들 임원들의 소임에 대한 규정과 미수행시 처벌을 포함하여 호혜의 지속성 담보를 도모했다. 동계의 규모를 25원 내로 규정한다거나⁶⁰, 임원의 체임에 있어 미수된 계금 관리 내용을 정산하게 했다.

1665년(현종 6) 동계는 완의가 없어 설립 및 조약 설정의 취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사계와 대동소이하게 상호 부조와 공유자산의 관리를 위한 호혜의 원칙을 갖추고 있었으며, 계금의 운영이나 유사의 관리 그리고 계원에 대한 규약을 통해 이러한 호혜를 유지하기 위한 협동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98년(숙종 24) 동계를 중심으로 사계를 합계한 다음 동계는 남구명의 완의를 필두로 9조로 구성된 절목을 갖추었다. 절목의 골자는 1665년의 동계를 계승하여 상호부조, 공유자산 관리, 계금 운영 그리고 계원 관리였다.

동계 중수는 기존에 마련되었던 동계 규약과의 단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구규를 준수하되, 내용과 방향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먼저, 동계의 호혜를 위한 상호부조 범위는 길사(吉事)와 상사로 구분하고 길사에 대해 먼저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의 방법을 시장에서 무역을 통한 물품지원으로 제시하면서 지원의 횟수도 사혼(肆婚)과 사상(四喪)으로 기존대비 두 배 확대했다. 다만, 이 경우 동계의 계원에 대한 자격의 제한을 가하여 과도한 지출을 대비하고자 했다. 그리고 호혜와 협동을 위한 방어의 동계의 공유자산에 대한 운영 규칙을 정했다.

60 18-19세기 경기도 양성현 禁松契는 추가 가입은 허용하면서도 자퇴는 불허하여 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도 했다(한미라, 「조선후기 가좌동 禁松契 운영과 기능」, 『역사민속학』 35(2011), 156-158쪽).

1. 계에서 갖추고 있는 교자(轎子), 면단석(面單席) 등의 물종을 계원 외에 빌려 사용하는 사람은 먼저 가진(價錢)을 납입하고 사용하되, 교자는 1냥, 단석은 5전씩 해서 따른다. 그리고 교자 위를 장식하는 청장(淸帳), 모장(毛帳), 주렴(珠簾)과 단석, 방석, 지의(地衣) 등의 물건을 나누어서 내어주지 말일이다.
1. 대반(大盤) 4립(立), 평반(平盤) 2죽(竹), 목쟁반(木鉢盤) 4죽은 계원 외에 절대로 주는 것을 허용하지 말일이다.⁶¹

공유자산의 내용 중 예전 동계의 목초지와 관련한 내용은 사라졌으나 사계를 계승하여 혼상을 위한 기물을 갖추고 있었다. 교자, 면단석 등은 계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전제하면서도 대여에 사용 비용의 납입을 강조했다. 물품의 종류는 교자, 면단석을 비롯하여 대반, 평반, 목쟁반 등으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자를 대여함에 있어 교자를 구성하는 관련 부속품의 일괄 대여를 통해 훼손이나 미반납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하여 공유자산 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했다.

동계 절목에는 계금의 관리를 위해 식리 방안을 제시했다. 공유자산을 대여하여 계금을 확보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상포(喪布)에 대한 지출 외에는 식리를 통해 계금 증식을 도모했다. 그리고 계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사와 유사의 임기와 대우 그리고 강신의 설행으로 간소화했다. 그러나 이는 동계 구성원에 대한 결속력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죄목(罪目)을 설정하여 계원 결속 약화의 소지를 절충하였다. 죄목은 중죄에 대한 삭거와 상·중·하죄에 해당하는 내용과 벌칙을 명기하였다. 이 중 중죄에 따른 삭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61 『契案 第7號』, 「節目」.

부모에게 불효하고[父母不孝] 얼자가 적자를 능멸하거나[擊凌嫡], 친족간에 화목하지 못하고[至親不和] 이웃 사이에 도모하지 못할 경우[隣里不睦].⁶²

중죄의 내용은 사계와 동계의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효우돈목이라는 성리학적 가치에 집중한 특징이 있다. 이외의 장유유서 질서 혼란, 망언, 호상 불참이나 동계 결의를 전파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주과(酒果)를 계에 납부하게 했다. 이와같이 1698년(숙종 24) 방어리의 사계와 동계를 통합하여 이른바 동계를 중수하는 과정에서 두 계의 규약을 계승하여 조목을 체계화했다.

17세기 말 동계로 중수된 후, 1749년(영조 25) 이전에 개수된 동계의 완의는 동계를 지속하기 위한 계원의 협동의 결과물로서 '18세기 전반 완의'로 완성되었다. 완의는 이전 규약과 절목보다 대폭 증대한 19조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조목은 기존의 동계 조목을 계승하여 부조의 범위, 공유자산 관리, 계금 운영 그리고 계원 관리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계는 계원에 대한 상사와 혼사에 대한 부조라는 호혜의 범위를 정했다. 부조의 범위는 상사와 길사로 규정하고, 이는 사계를 계승한 동계의 계원을 포괄하고 있었다. 상사의 경우 3년 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초상, 빈역(殯役), 장사까지 식물(食物)과 잡물을 지원했다. 길사의 경우 삼혼(三婚)으로 범위를 줄이면서도 식물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조의 범위도 방어리를 중심으로 한 인근 동리에 거주하는 동계 계원으로 한정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지출의 증가로 인해 계의 재원이 축소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공유자산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동계 자산의 관리와 운영을 세분했다.

62 『契案 第7號』, 「罪目」.

1. 장례 때 소용하는 상여, 잡물은 역이 끝나고 난 뒤 역군이 모두 운반해 오고, 본가로부터 술 3분을 출급 받고 동주(洞酒) 3분으로 역군을 공궤할 것.
1. 교자(轎子)와 모청장(毛靑帳), 잡물은 동계 계원의 신행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⁶³

동계의 잡물은 계원에 한해 사용하되 빌려줄 경우 가전(價錢)을 확보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수와 구매 등과 관련한 관리에 대비하게 했다. 이들 공유자산, 즉 계의 잡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대체물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례 때 사용한 상여 등의 잡물은 사용 후 관리도 규정했다. 잡물에 대해 용도에 따른 사용처를 규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했다. 즉, 공유자산의 관리를 위해 잡물의 회수와 용도의 제한을 분명히 했다.

방어리 동계는 18세기 전반 길흥에 사용할 잡물, 즉 공유자산의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실시했다. 마을 동계의 잡물에 대한 내용과 잡물 이용에 대한 정가를 규정했다.

교자(轎子)+청정(靑帳)+모장(毛帳)+수렴(珠簾)=1냥 내(5전 교자, 1전 청장, 3전 모장, 수렴 1전), 대차(大遮) 7전, 소차(小遮) 3전, 휘장(麾帳) 1전, 용여(龍輦)+상여(喪輦)=2냥, 양비(兩備) 1냥, 지의 2건+면단석 2건+면석 2립+화방석(花方席) 4立=1냥, 초장석(草長席)+초방석(草方席)=5전, 대쟁(大錚) 2병·과(鏢) 2병=4전, 대반(大盤) 4립+평반(平盤)+목쟁반(木錚盤) 4죽=3전 내(목쟁반 4죽 가 1전), 관대+사모+각대+혼함(昏函)=1냥 내(5전 관대, 2전 혼함, 사모 1전 5푼, 각대 1전 5푼), 신비(新備) 화단석(花單席) 3립 가 1전, 용여 2전⁶⁴

상사와 혼사에 사용할 교자, 지의를 비롯한 쟁반에 이르는 잡물이 구비되

63 『洞契節目冊』, 「完議」.

64 『洞契節目冊』, 「完議-雜物備用定價」.

었으며, '신비(新備)'를 통한 새로운 물종의 준비 등을 실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했다. 잡물에 대해 계원 이외의 구성원이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 시 징수할 가전(價錢)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곧 방어리 일대 동계 구성원 외에도 빈번한 사용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방어리 동계의 작동은 좁게는 계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공유자산에 대해서는 방어리 일대 주민에게까지 사용범위가 적용되었다.

공유자산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이용 정가를 징수한 규약은 계금의 관리와 관련 있었다. 기존 규약에 계금 관리를 위해 설정했던 식리 등의 내용은 사라졌음에도 계원에 대한 부조 범위는 늘어났다. 이에 대해 규약 개정을 통해 부조 물종을 축소 및 폐지하거나 공유자산 대여료의 정확한 징수로 대응했다.⁶⁵ 그리고 '18세기 전반 완의'에서는 계원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한 규찰도 포함되었다. 계회 시 분란을 유발하거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즉 독교(獨矯)의 사용 등에 대해서도 금단하도록 했다. 특히 상한배가 군관의 직임을 빙자하여 승청(升廳)할 경우 납속 조치했다. 이러한 규제는 무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계가 사족 중심의 동계에 흡수된 이후 단기적으로는 공존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신분의 변화 등에 따라 동요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방어리 동계는 17세기 중엽 조직된 후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던 사계를 17세기 말에 포괄하였으며, 18세기 전반 완의와 절목에 대한 개정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 및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여기에는 동계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대응, 새로운 재원의 관리, 공유자산의 유지가 수반될 필요에 따른 대응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조목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계원 첨의를 모으는 협동이

65 『洞契節目冊』, 「己巳三月初九日改節目」·「丁亥四月日改節目」·「壬寅三月十八日節目改定」·「壬戌正月二十日洞會時新節目」.

수반되었다. 이로 본다면 방어리 동계는 구성원의 상호 부조와 공유자산 이용이라는 호혜 구조를 지속하고자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협동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제도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 인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조선시대 마을 공동체 운영을 위한 규약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공유자산(Commons)의 유지 및 지속을 위한 이른바 호혜와 협동의 가치 발견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대상 자료는 경상도 경주 방어리에 현전하고 있는 상동계 자료이다.

방어리 상동계의 출발은 양란 이후 습사를 위해 결성된 사계였다. 1652년(효종 3) 방어리의 무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계는 동락(同樂)과 상구(相救)의 필요성에 따라 계원간의 규약을 정리한 입의를 마련했다. 이후 1683년(숙종 9) 혼상으로 상징되는 동락과 상구의 원칙이 훼손되자 복원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1689년(숙종 15)까지 지속했다.

사계의 유지를 위해 입의에 따른 절목을 마련했다. 1652년의 절목에는 상사에 있어 각 절차에 따라 백지와 식물에 대한 부조 그리고 영혼 때 건어와 백주를 부조하여 축의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동계 공유자산인 차일과 병풍 등의 사용 비용에 대한 내역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훼손된 후 복구를 위해 1689년에 절목개정이 있었다. 다만, 당시의 개정은 계원간의 동락과 상구보다는 계의 지속성을 위한 체제 정비에

비중을 두었다. 무부중심의 사계가 약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 절목은 계원의 구성과 징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17세기 방어리 상동계는 계원 상호간의 동락과 상구를 위한 호혜적 부조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공유자산도 운영했다. 역시 이러한 규약에 대한 개정을 거듭하며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 협동의 노력이 있었다.

방어리 사족의 성장에 따라 무부 중심의 사계와 달리 동계가 구성되었다. 1665년(현종 6) 동계의 절목은 계금 구성과 운영을 위한 내용이 중심이었다. 호혜를 위한 내용은 상사와 혼사였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마련되지 못하고 동계의 운영 지속을 위한 규약이 중심을 이루었다. 공사원의 구성, 강신의 시기, 계원의 임무와 단속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규약에는 과거 준비, 재난 등과 같은 임시 변동 사건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자산으로 목초지를 설정하고 동계에서 방목감고를 통해 관리한 사실은 계원간 호혜와 협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목에 대해 동계는 1685년(숙종 11)과 1702년(숙종 28) 내용 일부 개정을 거쳐 호혜의 원칙 지속을 도모했다.

동계 운영의 취지와 체계를 갖추게 된 계기는 1698년(숙종 24) 남구명에 의해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17세기 중엽 이래 사계와 동계가 공존하고 있던 마을 공동체의 특징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계와 동계를 함께 주도하던 경주이씨에 의해 동계의 주축이었던 경주최씨와 연대하여 합계를 실현하였다. 이는 다른 사계에 대한 연구결과 중·서층 주도로 신분적 차별성이 있었다는 기존의 사례와 차별되며, 무부들이 주도하던 사계가 사족 주도의 동계에 흡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구명은 합계를 계기로 동계의 취지가 길흥의 부조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호혜와 협동의 가치를 위해 준수해야할 규약의 방향에 대해 정의했다. 그는 상호 부조의 범위와 부조의 내용 그리고 임원의 선임과 그 역할에 대해 서술한 조약을

정비하고 교자, 주립, 방석 등의 공용 물품의 관리와 사용료에 대해 규정했다. 남구명의 동계 중수를 계기로 사계 구성원도 포괄하는 동계로 일신하게 되었다.

방어리 동계의 내용 중 길흥의 상호 부조를 위해 필요한 물품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규약이 존재한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세기 초 절목에는 상사의 절차별 지원의 세부 내용을 규정함과 동시에 길사의 범위를 축소했다. 이는 상장례의 강조와 절차의 세분화 정착에 따른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자 공유자산의 안전한 관리도 포괄하고 한 결과였다. 특히, 동계의 공유자산인 교자, 잡물 등의 사용 범위도 계원으로 엄격히 제한했으며, 사용료에 대해서도 다시 확립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계원간의 상호 부조가 재원의 축소에 따라 연동하는 것은 물론 계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재조정하는 입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는 19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이로써 동계는 19세기까지 호혜와 협동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7-18세기 경주 방어리에서 지속한 동계를 대상으로 호혜와 협동의 가치를 추적했다. 17세기 초 무부를 중심으로 조직한 사계는 길흥 부조를 도모하면서 공유자산으로 기물과 계금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17세기 후반부터 동계가 존재했으며, 사계와 동계에 모두 관여하던 경주이씨 주도로 17세기 말 동계를 중심으로 사계를 합계하는 협동이 실현되었다. 17세기 말 동계가 중수되자 동계는 상호 부조를 위한 목적에서 계금이라는 기금과 공유자산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규약을 개정했다. 동계는 호혜를 실현하기 위한 규약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의 모습을 드러냈다. 따라서 17세기 방어리 사계는 이른바 동락과 상구라는 호혜를, 17세기 말과 18세기 전반은 사계와 동계의 결합을 위한 협동을, 그리고 18세기 동계는 신의에 기반한 상부상조를 향한 물질 호혜 구조를

구축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방어리에서는 계를 통해 유·무형의 공유자산이 가지는 호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규약과 절목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협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府尹先生案』, 『慶州邑誌』.

慶州李氏判尹派譜所, 『慶州李氏判尹公派譜』. 回想社, 2000.

慶州崔氏白沙公派世譜刊所, 『慶州崔氏白沙公派世譜(全)』. 1993.

慶州崔氏司成公派門中編輯, 『慶州(月城)崔氏司成公派譜』. 韓國族譜新聞社, 1998.

南九明, 『寓菴先生文集』.

趙克善, 『忍齋日錄』·『冶谷日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M.F. No.9931-2(慶州市 外東邑 防禦里 上同契文書).

2. 단행본

더글라스 C.노스 저, 이병기 역,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한국경제연구원, 1996.

엘리너 오스트롬 저, 윤홍근·안도경 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 RH Korea, 2010[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0].

趙智唯七編纂,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1917.

정해은, 『조선의 무관과 양반사회』. 역사산책, 2019.

제임스 스콧 저, 김춘동 역, 『농민의 도덕경제』. 아카넷, 2004[J.C. Scott,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7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7. 1979.

한도현 외, 『양동마을과 공동체의 미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3.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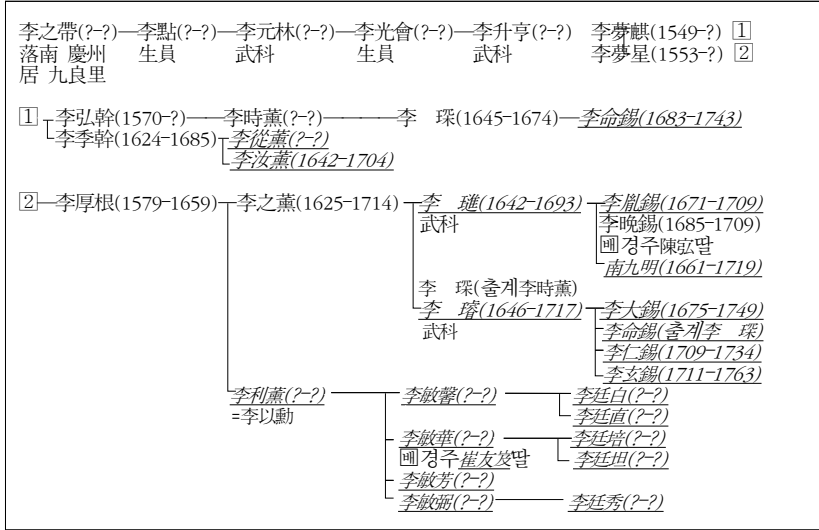
김경옥, 「18세기 후반 영암 閔武亭 社布契의 조직과 향촌 사회」. 『고문서연구』 35, 2009, 1-35쪽.

김명자, 「18-19세기 永川 鄭世雅 후손들의 請諡와 門中 활동」. 『嶺南學』 18, 2010, 293-3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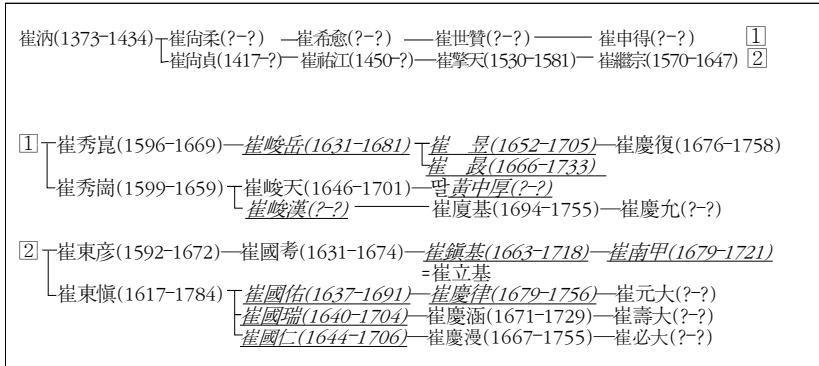
金鶴洙, 「古文書を 통해 본 蘇亭 慶州李氏家の 家系와 社會經濟的 기반」. 『古文書集成

- 慶州 蘇亭 慶州李氏篇』 62, 2002, 1-31쪽.
- 나선하, 「조선 중·후기 靈光 吏胥집단의 契 운영과 그 의미: 射契와 老契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6-1, 2003, 1-15쪽.
- 나영훈, 「조선후기 觀象監 관원의 친족 네트워크와 결속」, 『한국학』 42-1, 2019, 45-86쪽.
- 박종천, 「공감과 개방의 문화공동체, 석천마을」, 『석천마을과 공동체의 미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96-125쪽.
- 이광우, 「조선후기 慶尙道 三嘉縣 玉溪亭契의 재구성」, 『南溟學研究』 52, 2016, 215-257쪽.
- 李炳勳, 『朝鮮後期 慶州 玉山書院의 運營과 役割』,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慶尙左道 방위활동」, 『軍史』 76, 2010, 61-88쪽.
- 李樹煥, 「慶州 龍山書院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龍山書院』, 집문당, 2005, 13-55쪽.
- 정구복, 「古文書用語 풀이: 齊馬首와 損徒」, 『古文書研究』 5, 1994, 333-339쪽.
- 정수환, 「17세기 경주 국당리 동계의 전통과 호혜 원리」, 『한국학』 47-4, 2019a, 39-75쪽.
- _____, 「17세기 淸州 莘巷書院과 宋象賢 추모의 정치적 함의」, 『韓國書院學報』 9, 2019b, 57-86쪽.
- 한미라, 「조선후기 가좌동 禁松契 운영과 기능」, 『역사민속학』 35, 2011, 141-173쪽.

부록1- 경주 방어리 경주이씨 가계도⁶⁶



부록2- 경주 방어리 경주최씨 가계도⁶⁷



<부록법례> '이름': 동안·계안 입록 인물

66 慶州李氏判尹派譜所, 『慶州李氏判尹公派譜』(回想社, 2000). 경주이씨(부록 1)와 경주최씨(부록 2) 가계는 17-18세기 「射接案」, 「射案」, 「洞案」, 「契案」 등제 인원을 기준으로 성명이 일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도식화했다.

67 慶州崔氏司成公派門中編輯, 『慶州(月城)崔氏司成公派譜』(韓國族譜新聞社, 1998); 慶州崔氏白沙公派世譜刊所, 『慶州崔氏白沙公派世譜(全)』(1993).

국문초록

이 연구는 공동체의 규약과 제도의 변화를 인간 주도로 분석하는 신제도주의 이론과 공유자산을 호혜와 협동의 관점에서 분석한 성과를 도입하여 조선 시대 조선 농촌공동체의 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엘리트 사족이 성리학적 이념을 원용하여 이른바 지역사회 주도권을 확보하여 향촌자치를 실현했다는 선행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한다.

분석대상 자료는 경주 외동읍 방어리에 존재했던 17세기 사계와 18세기 동계이다. 무부(武夫)를 중심으로 조직했던 사계와 사족(士族)이 주도한 동계의 역학관계와 호혜를 지향하며 실현했던 협동의 실재를 추적했다. 사계는 습사를 통한 무과 응시 목표를 위해 기물과 계금이라는 공유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규약을 마련하고 개정을 거듭했다. 17세기 후반 사계와 동계가 공존하다가 17세기 말 사계와 동계를 함께 주도하던 경주이씨에 의해 두 계의 합계(合契)가 실현되면서 동계로 계승되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도 상부상조라는 성리학적 가치를 향해 공유자산을 운영하는 협동을 실현했다.

연구결과는 방어리 사계와 동계를 대상으로 신분적 역학관계에 따른 대립이 아닌 협동에 의한 합계가 실현된 사례를 제시했다. 마을 계 운영의 변화 요소도 이러한 신분적 역학관계가 아닌 기근이라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도 논증했다. 그리고 과거(科擧)와 상조(相助)라는 호혜가치를 위해 공유자산을 유지 및 지속하고자 했던 협동의 실재를 발견했다.

투고일 2020. 9. 21.

심사일 2020. 10. 30.

게재 확정일 2020. 11. 5.

주제어(keyword) 경주(Kyeongju), 동계(Village Compact, Village Kye), 사계(Archery Fraternity/ Archery Society), 방어리(Bangouh Village), 호혜(Reciprocity), 협동(Cooperation)

Abstracts

The Reciprocity and Cooperative Values of Village Compact in the Late Choson Dynasty: A Case Study of an Archery Society and Village Kye

Jung, Su-hwan

This study examines the systems of rural pre-modern Choson communities by introducing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to analyse changes in community conventions and systems under human initiative. The study also addresses the achievements of shared assets from a perspective of reciprocity and cooperation. This approach is rooted in the determination by prior research that local elites achieved so-called 'community initiative' by using a Neo-Confucian ideology to realise local autonomy.

The data analysed are focused on a 17th century archery society and the 18th century village Kye, which existed within the boundaries of Bangoh village, in Kyeongju. The study examines the dynamics of the areas' elite groups, which were organised around military activity, and the reality of cooperation that was achieved under the values of reciprocity. For example, the archery society revised its rules to manage its shared assets of property and to prepare for the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through archery practice. The society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village society and promoted cooperative values until the late 17th century. The society then influenced the village of Kye, with its village compact, from the 18th century, effectively sustaining the commitment to cooperative values and the sharing of assets in line with the Neo-Confucian principle of cooperation.

The research results present examples of how the value of cooperation, not confrontation based on the identity dynamics, was achieved. It does this by analysing an archery society and the village of Key to discover the reality of cooperation for the continuation of shared assets, promoting reciprocity and for the purposes of mutual aid.

